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대행 행위 금지〉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31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25.
- (3) 회 부 일 : 2024.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음. 티몬과 위메프는 수령·보관 중이던 판매대금을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직면해 있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보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대금의 유용을 막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2호 삭제 및 제21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1. (생략) 2. <u>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u> <u>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u> <u>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u>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u>금지급의 신뢰 확보</u> <u>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21조(금지 행위) ① (생략) <u><신설></u>	제21조(금지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직전 사업연도의 중개거래 수익(국내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통한 총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법률 제2030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 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	<u>으로 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자</u> <u>2.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거래금 액(국내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방법으 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 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법률 제2030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 1. ----- -----

현행	개정안
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 ----- ----- -----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4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한 자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가 여행사 등 플랫폼 입점업체들에게 판매대금을 미정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판매자들은 상품판매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으며, 환불마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되었음.

○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입점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의 총액은 1조 3천억원으로, 피해업체 수는 48,124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¹⁾.

○ 이번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²⁾을 겸하면서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재화·용역의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판매대금의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 8. 25., 위메프·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 현황점검, 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마련)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다만, 판매대금의 정산업무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의 내용인 반면, 현행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B2C)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³⁾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판매대금의 별도관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⁵⁾,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⁶⁾과 대가의 수수 및 정산대행이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⁷⁾이 발의되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전자적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소비자 권익의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음.

5)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20호),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22호), 이현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46호),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49호), 이건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41호),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73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61호),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49호), 윤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77호),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34호)

6)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48호)

7)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53호)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내용⁸⁾을 삭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전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라는 점, 현행법의 내용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대금 수령 및 정산 업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사업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소매업자의 정산 주기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